

제23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 운영계획

평소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구정 전반사항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
구정 질문을 실시하여 행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| | |
|------|---------------|
| 문서번호 | 의회사무국-9543 |
| 결재일자 | 2014. 11. 25. |
| 공개여부 | 대시민공개 |

★

| | | | | |
|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|
| 담당 | 의사담당 | 구의회사무국장 | 구의회의장 | |
| 박미경 | 박민택 | 정은수 | 11/25 임태근 | |
| 협조 | | | | |

제23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 운영계획

2014. 11.

의 회 사 무 국

- 발언시간 (회의규칙 제65조의2)
 - 구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음.
 - 구정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, 1문 1답의 방식으로 할 경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.
- 발언횟수 (회의규칙 제31조)
 -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음. 다만,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,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
 - ※ 한 회기 중 의원별로 1문 1답은 1회에 한함.

Ⅲ 세부추진계획

- 구정질문 요지서 의원 배부 : 2014. 11. 26(수)
- 구정질문 요지서 수합 : 2014. 11. 26(수) ~ 12. 08(월)

[붙임] 구정질문 요지서 서식 1부. 끝.

I 구정질문 개요

- 일 시 : 2014. 12. 11(목) 10:00 (1일)
- 장 소 : 본회의장
- 참석대상
 - 의 원 : 전 의원 (22명)
 - 공무원 : 구청장 및 5급 이상 관계 공무원
 - 도시관리공단 이사장, 성북문화재단 상임이사
- 관련근거
 - 지방자치법 제42조 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)
 -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(발언시간의 제한)
 -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(구청장등의 출석요구)
 -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(구정질문)

II 구정질문 운영방법

- 질문순서
 - 1)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구정질문 (보충질의 포함)
 - 소관 업무순서별로 질문하되 접수순서에 따라 질문
(보건복지위원회, 도시건설위원회,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순서)
 - 2) 1문 1답 방식의 구정질문 (반드시 답변자 명기)
 - 3) 질문서 접수 순
- 질문요지서 제출 : 2014. 12. 08(월)

구 정 질 문 요 지 서

- 수 신 : 성북구의회의장
- 참 조 : 사무국장
- 제 목 :

| 질문구분 (선택) | 질 문 요 지 | 답변자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|
| (일괄질문) (1문 1답) | | |

- 발언시간
 - 일괄질문 : 20분 이내 (보충질문 : 10분 이내)
 - 1문 1답 : 질문 ·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
- 답변자 지정
 - 반드시 답변요구 공무원 명시 (구청장, 국장)
- 제출일자 : 2014. . .
- 제 출 자 : 위원회 의원 (인)